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2023. 12.



행 정 위 원 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행 정 위 원 회]

의안 번호	284
----------	-----

제안년월일: 2023년 12월 13일

제 안 자: 행정위원장

1. 감 사 목 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사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성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 중심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 사 기 간

-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2023. 11. 28.(화) ~ 12. 5.(화)

3. 감 사 대 상 기 관 및 사 무

- 감사대상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사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 감사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9조 제3항에 따른 사무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행정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사항 포함

4. 감사반 편성

- 감사총괄: 행정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감 사 위 원(가나다순)	사무보조자
신흥식	우경란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현호, 최봉희	• 의사팀 • 정책지원관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감사장소	감사내용	비 고
1일차		영등포구청 제1감사장, 동주민센터 (대림1동, 문래동)	- 현황보고 및 청취 - 서류확인 - 개별감사 - 현장확인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오전		- 수감사항 정리	
	오후	- 공개질의 및 답변 - 강평		

※ 토요일 ~ 일요일: 지역의정활동 및 2024년도 예산안 검토

6. 감사방법

- 해당 감사반의 각 국별 실시
- 현황보고 및 청취
- 보충자료 제출 요구
- 서류감사 및 현지 확인
- 개별감사 및 공개질의, 답변
-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7. 시정 및 지적사항: [붙임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참조

붙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부. 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행정위원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11.29. (수)	신홍식	[공직 비위 사건 엄정 조사로 공직 기강 확립] ○최근 3년 우리 구 징계는 14건 (21년 7건/22년 2건/23년 5건)이며, 이 중 중징계(정직)는 3건이 있었고 2021년도에는 특수 협박, 절도, 음주운전이 있었으며 2023년에는 공무집행 방해, 성희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로 공무원 비위 사건은 조직 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	○감사담당관은 무관용 처분을 원칙으로 공직 비위 사건에 대하여 엄정 조사해야 하며, 우리 구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전 부서장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2	11.29. (수)	신홍식	[공무원 자기계발 적극 권장] ○2023년 10월 31일 현재 신고된 겸직자는 8명이며 주로 지역단체활동,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학회, 단체 멘토, 유튜브 등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위반자는 없었으며 모두 겸직 신고된 사항으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음.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선에서 겸직신고는 철저히 하되 자기계발을 적극 권장하고 공무원으로서 쌓아왔던 노하우 등을 타인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권면해주시기 바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	11.29. (수)	신홍식	[조례에 근거 없는 주민자치위원회로의 전환 부적정] ○현재 주민자치와 관련된 조례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두 가지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음. ○최근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이후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임의로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12개 동 중 10개 동)하는 동도 있고 그대로 존속되는 동(대림3동, 양평1동)도 있어 관리의 불편함과 동별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가 현재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 가능한 근거 조항 없이 임의로 폐지하고 전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 판단됨. ○관련 부서에서는 시범운영 후 제도 운영을 평가하여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이 필요한 동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그 근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했을 것으로 봄. ○2개의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하거나 주민자치회 조례 부칙에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후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토록 하길 바람.
4	11.30. (목)	신홍식	[개인정보보호법 지나친 확대 해석 유의] ○관내 유관단체 현황(단체명과 단체장만 명시)을 의원의정활동 일환으로 관계부서(총무과, 자치행정과)에 요구한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음.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보호 원칙에 의해 정보주체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을	○관내 유관단체 단체명, 단체장 현황자료는 구청 및 의회 행사 시 몇 차례 공개된 바 있으며 단체장의 경우 공인이라 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함을 규정했기에 단체장 이름 공개는 해당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가 있을 때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감사담당관, 자문변호사, 정보공개 담당자, 선거관리위원회, 구의원 및 사무관 7명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되는지 자문을 구해보았으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고 답변함.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정보 담당자의 의무 사항으로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자의적인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음. ○공무수행에 있어 법을 지키되 자의적인 결정은 지양하고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구청 주관 행사뿐 아니라 필요 시 구의원과 구민들에게 공유해야 함.
5	12.4. (월)	신홍식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철저히 준수] ○영등포구청 직원 중 부부 공무원과 형제·자매 공무원이 120명이 있음. ○이는 업무상 공직자의 채용, 승진, 전보, 상벌,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될 수 있어 직원 간 사기를 저하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 ○서면 신고 및 회피 신청 안내를 충분히 하여 이로 인한 직원 간 불신이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람.
6	12.4. (월)	신홍식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보완시정 요구] ○건축허가 문제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부적정한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가 층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적정한 책임과 권한을 마련해두고 있으므로 영등포구도 타구와의 규칙을 비교 검토하여 기준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문제가 되어 지적한 사실이 있음. ○우리 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은 타구(16개구)와의 규칙과 다르게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과장 전결로 되어 있어 그 책임과 권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세부적으로 건물 층수 및 면적 기준을 재조정할 것을 지적하였으나 지적사항 처리 결과 층수에 따른 건축허가 전결 기준이 아직 시정되지 않음.	
7	12.4. (월)	신홍식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 조성 원안대로 추진할 것] ○본 건은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구민 의견 수렴 절차에 따라 구민이 감사 청구한 것으로,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 조성안 변경과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도서관 축소 및 동주민센터 이전이 아닌 원안대로 도서관만을 조성할 것을 요청함. ○구청이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 조성 변경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설명이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구청은 변경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안대로 도서관을 조성할 것을 요청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8	12.4. (월)	신홍식	[여의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개최 요구] ○ 본 건은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구민 의견 수렴 절차에 따라 구민이 감사 청구한 것으로, ○ 여의동 주민자치회가 2023년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을 지적하며, 주민자치위원회로의 변경건에 대하여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고 주민자치회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였음. ○ 여의동 주민자치회는 2023년 주민총회를 미개최할 것을 지난 11월 9일 의결로 결정하였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20조제2항에서 주민총회를 연 1회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단서조항에서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의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주민총회를 통해 논의 및 결정하지 아니하고, 주민자치회 의결로 사안을 결정하였음.	○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으로, 연 1회 개최할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 주민총회의 결정사항과 그 역할을 고려했을 때, 연 1회 개최해야 한다는 것은 강제조항으로 봐야할 것임. ○ 국회에 발의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들을 살펴 보더라도,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에서 단서조항을 통해,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연 1회 이상의 개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 주민총회의 미개최를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가능하도록 하려면, 동작구 사례처럼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야 된다고 사료됨. ○ 다만, 주민총회가 주민자치회의 활동 및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주민총회의 미개최를 주민자치회 스스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로 결정짓는다는 것은 주민총회의 의미와 역할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짐. ○여의동 주민자치회가 해당 조례 규정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주민총회를 미개최한 것은 주민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것임. ○주민자치회 활동 및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을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하는 중요사항이기 때문임. ○여의동 주민센터 및 관계부서는 여의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도록 안내할 것이며, 주민총회 개최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로의 전환 및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9	11.30. (목)	우경란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해야] ○보건소에서 내년부터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예정임.	○신식 교육 장비를 활용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에 놀이를 활용하는 등으로 보다 쉽고, 친 주민적인 교육방안을 모색해주길 당부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교육장 운영관련 서울시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관련 보조금이 지급되었음. ○ 해당 보조금으로 집기 등 교육장비를 구매할 때, 최신 모델로 구매하는 등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또한, 교육장을 어디에 마련할 것인지도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할 것.	○ 더불어,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자료 및 교육물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향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심폐소생술 교육장 또한, 단순 보건소 내 교육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다른 보건교육시, 교육장을 나눠 써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이를 감안한다면, 새로운 공간을 모색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함. ○ 더불어, 많은 구민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함.
10	12.4. (월)	우경란	[반장 보상품 지급 관리 철저] ○ 반장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 동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받을 두고 있음. ○ 우리 구는 동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반장에게 명절맞이 보상품을 2회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올해 설 명절에는 2,981명(미지급 24명)의 반장에게	○ 현재 위촉되어 있는 반장에게는 동 행사나 관심사 등을 문자 등을 통해 전달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유하고,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등 반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반장 보상품 지급대장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과 지급과정에서 확인되는 반장 위/해촉 등 행정사항을 즉각 처리해줄 것을 요청함. ○ 반장 보상품 수령대장에 대리서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89,430천원, 추석 명절에는 2,914명(미지급 26명)의 반장에게 58,280천원, 2023년에 총 147,710천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반장에게 지급되었음.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통해 제출된 반장 보상품 수령대장을 살펴보면, 대리서명 등 본인 확인이 불분명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관리가 미비한 점이 다수 확인되었음.	명 등 본인 수령 확인이 불분명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접 본인이 수령후 서명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임.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인이 수령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을 활용해 그 이유를 명시할 것을 요청함.
11	12.4. (월)	우경란	[예산서의 행정안전부 서식 준수 필요] ○영등포구 예산서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예산서 서식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예산서 서식에 따르면 예산총칙 이전에 ‘내년도 재정전망’, ‘시·군·구 구정 방향’을 실게 되어 있으나 이를 누락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예산서 서식을 준수하고, 이에 따라 예산총칙 이전에 ‘내년도 재정전망’과 ‘구정 방향’을 편제해야함.
12	12.4. (월)	우경란	[취업교육과 실제 취업의 낮은 연계성 개선 필요]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고령층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교육을 통해 취업인재 양성 및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여러 프로그램 중 지적인 프로그램은 투입된 예산 대비 취업 및 자격증 취득 성과가 미비해 사업운영의 다각적인 재검토 필요함. ○성과결과를 교육 과정에 연계해 수강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동기 부여가 필요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중장년 취업박람회, 경비신임교육, 요양보호사자격증 교육은 지원자도 많고 성과도 우수함. ○ 반면, 항공기체정비기능사자격증, 도배전문인력 양성과정, 산모아동돌봄전문가자격증 프로그램의 경우 자격증 취득 및 취업률이 매우 저조해 성과가 미비함.	○ 최종목표 성과 미달성시 교육비 환수, 중간평가를 통한 목표 달성 독려 등 다양한 방식 고려 필요함. ○ 참여도와 성과가 미진한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원점 재검토 필요함.
13	12.4. (월)	우경란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 실적 미비] ○ 영등포구 메타버스 플랫폼 영타운 채널을 활용해 관내 청년 대상 멘토링, 취업상담, 직무별 컨설팅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약 1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 중. ○ 예산 규모에 비해 참여도가 낮아 사업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코로나19 여파로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이 지자체별로 우후죽순 생겨났으나, 현재는 엔데믹으로 플랫폼의 수요가 감소함.	○ 투입된 사업 예산에 비해 사업 성과가 미비하여 전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함. ○ 향후 사업계획시 사업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미래 정책수요를 정확히 예측·반영해 트렌드에 뒤처지는 사업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함.
14	12.4. (월)	우경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추가적인 개선 노력 필요] ○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몇몇 단체의 경우 행사 참여 인원이 상당히 적은 편임. 회원	○ 사회단체보조금 교부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참여 예상 인원 또는 목표인원을 기재하도록 하며, 이를 심사과정에서 고려하는 한편, 미달성 시에는 패널티를 적용할 필요 있다고 생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와 추진사업의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해봤을 때 실적으로 제출된 것보다 참여자가 더 많아 야 된다고 생각됨. ○법정단체의 경우 운영비를 지원 받으면서 사업비 또한 지원받고 있는데, 사업내용이 부실한 점 이 발견되고 있음. ○또한, 한 법정단체의 경우, 임원진 사퇴 및 업무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해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정산 및 증빙서류 제출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음. 보조금 환수가 예상됨. ○담당부서에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단체를 직접 찾아 보완사항을 점검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칭찬할 만한 개선사항임. ○하지만, 단체 행사와 관련하여 현장을 직접 찾아 계획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음.	각됨. 다음연도 사업신청에서 감점요인 또는 지원금액의 감액요인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함. ○임원진 교체 등 내부사정으로 인한 보조금 정산 서류 미제출은 단체의 문제이기는 하나, 단순히 지원금 환수만으로 그치기에는 아쉬움이 남음. 집행부에는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단체 사무실을 찾아 지도점검의 시간을 갖는 것 이외에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행사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 및 지원 필요사항,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단체에서 행사 진행시에 일정을 담당부서와 공유하지 않아,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부서에는 미리 일정을 공유받아 몇몇 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해볼 것을 요청함.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보다 내실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5	12.4. (월)	우경란	[브라이트여의도 기부채납지 활용 결정 촉구] ○브라이트 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구)MBC부지는 구립 도서관으로 조성하고자 했으나, 운영비 등의 문제를 고려해 도서관 운영주체를 국립 또는 시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였음. ○또한 일부 주민들의 의견과 여의도 재건축 추진 상황을 고려해 동주민센터 이전을 검토하였음. ○이와 같은 이유로 여러 대안을 검토하다보니 부득이하게 브라이트여의도 기부채납부지 활용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 ○미래교육과 진정 및 청원의 80%가 브라이트여의도 도서관 관련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기에 구청으로서 빠른 결정을 내려 지역 내 혼란을 잠재울 필요 있음. ○브라이트는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어떤 시설로 내부를 조성할지 결정해 인테리어 공사만 진행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영등포구 전체 기부채납부지	○브라이트여의도 기부채납부지를 어떤 시설로 구성할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설문조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구청은 빠른 결정을 내려 도서관 면적과 최종 형태를 주민들에게 공표해야 할 것임. ○미래교육과는 진행 경과를 계속해서 보고할 것을 요청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활용에 대한 연구용역에 브라이튼여의도 조성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음. ○도서관 조성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구청의 설문조사 진행은 적절하며, 필요한 절차였다고 생각됨.	
16	11.30. (목)	김지연	['손목닥터 9988'예산 집행 및 명칭 사용 부적절] ○영등포구청 보건소에서는 서울시 자체 사업인 서울형 '손목닥터 9988'과 동일한 이름의 '손목닥터 9988'을 우리 구 공약 사업으로 명명하여 운영 중임. ○2023년 보건소의 해당 업무보고에 의하면, 업무보고의 제목은 스마트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로 서울시 자체 사업과 명칭과 동일하며, 업무보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서울시 자체사업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설명과 구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9988 토요일운동교실'의 2개 사업을 혼합하여 담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안	○'손목닥터 9988'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함. 고유명사인 서울시 사업과의 혼선이 있는 명칭사용의 문제, '9988운동교실 운영'을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공약사업화' 하는 것에 대한 예산 집행상의 문제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현행대로 예산 집행을 하면서, '손목닥터 9988'에 대한 공약사업을 이행한다고 볼 수는 없음. ○아울러 예산 집행에 대해 유사한 부적정 사례가 있는지 조사 및 지도 점검을 요구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임. ○공약사업의 이행에 대한 과도한 실행의지로 주민의 대표기관의 의결한 사항을 비뚤게 적용하는 등의 예산 집행은 재발되어서는 안될 것임.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내서'에 명확한 지침이 있는 국가 공동사업으로 우리 구만의 특정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영등포구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한'9988 토요운동교실'의 경우 2023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구의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음. ○그러나 구청장 공약사업의 이행을 위해, 관련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대사증후군 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을 일부 이용하여 9988운동교실을 운영하였음. 대사증후군 센터 운영에 대한 토요일 인건비로 운동교실의 강사로 2,409천원을 지급한 것임. ○보건소의 '손목닥터 9988' 공약사업의 운영과 업무보고는 다음의 문제점이 있음. - 첫째, 서울시 자체사업인 고유명사 '손목닥터 9988'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동일 사업으로 착각하는 등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 둘째,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항목에 대한 집행을 타 사업(대사증후군 센터 인건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의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투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함. - 셋째, 업무보고의 내용에는 보건복지부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9988 토요 운동교실’의 두 가지 사업이 혼합하여 보고하였으나, 업무보고 내 예산에는 운동교실에서 활용한 강사료 등 일부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보고가 진행됨. ○이는 예산을 활용하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단지 공약사업을 이행 자체만을 목표로 두어, 의회의 심의를 무력화하고,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상실한 주객이 전도된 사례라 볼 수 있겠음. ○당초 ICT를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를 하겠다는 공약의 내용은 지침이 명확히 있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에 운동교실이 더해지는 정도의 결과로 이어짐. 즉, 이러한 집행 방식으로 공약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에 대한 운동교실 인원 모집을 한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특색있는 후속 케어로 포장할 수도 있겠으나, 실질적으로는 모바일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헬스케어 사업을 수행하는 타 자치구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사업의 내용이라 보았을 때, 이 공약사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함. ○보건소에서는 서울시 자체사업이었던 손목닥터 9988이 지자체 사업으로 변경될 것을 예상하였고, 이를 공약사업으로 이어 진행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기존대로 동일한 이름의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에 공약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사료됨. ○그러나 2023년 1~4월 공약사업을 점검하고, 적절하게 공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주민배심원 단제도를 시행한 바 있으며, 공약사업의 이행에 부득이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적절히 개선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온 것은 문제가 있음. ○아울러 2024년 예산안에는 2023년 업무보고 때까지 소위 공약사업의 명칭으로 일컬어진 ‘손목닥터 9988’의 내용 및 예산 편성이 전혀 없었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7	12.4. (월)	김지연	[영등포구 정신보건사업의 구 특성을 반영한 체계화 및 내실화 필요성] ○ 23년 상반기 영등포구 주민 중 2만3천명이 정신건강의 사유로 병원을 내원했으며, 22년도에는 약 3만명의 주민이 정신과 내방을 함. 2023년 12월 국가적으로도 정신건강 비전선포 대회를 여는 등 정신건강과 관련한 공적 영역의 중요성은 나날이 더 강조되고 있음. 특히 이는 오랫동안 개인적 영역으로 여겨졌으며,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주민을 외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기초단체의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 ○ 정신보건사업을 포함한 보건소의 많은 사업들이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어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고, 지침이 명확하게 있는 사업들이 많은바, 우리 구의 특징을 살려 진행하기보다 각 사업별 목표 수치를 채우는 것에 집중하기 쉬운 구조임. 1) 힐링캠프 상담실 - 힐링캠프 상담실은 구청 정신보건사업 중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 상담임. 상담 신청	○ 영등포구 내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의 목표 설정을 위해 통계청의 자살률 등의 일부 통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 내의 정신건강 관련 다양한 지표들을 파악하여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음. ○ 각 사업의 시행 횟수나 진행인원이 사업의 목표가 아닌 유의미한 정신건강 통계치에 대한 증감을 서비스 목표로 삼아 적극적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음. ○ 힐링캠프 상담실의 상담사 급여 수준을 현재 기준인 생활임금수준에서 상향조정하거나, 근무형태의 유연함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대우 및 근무를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비슷한 업무를 하는 국시비 매칭 사업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의 처우와 동일한 수준으로의 향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상담의 연속성면에서 볼때나, 구민을 위한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위한 상담사의 적절한 처우는 반드시 필요함. ○ 힐링캠프 상담의 회기별 안내문자 메시지 전송의 필요성이 있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에서 진행까지 걸리는 대기 시간이 평균 1개월로 대기시간이 긴 편임.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 및 내방의 의지를 가진 구민임을 감안할 때, 대기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기간제 상담사의 중도 퇴사로 인한 전문인력의 공백이 생긴 점이 대기시간 증가의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음. 2023년도에도 3개월의 상담사 공백기가 있었으며 이는 구민의 서비스 부재로 이어짐. - 상담 당일 취소하는 비율이 전체 상담의 12%로 10번 중 한 번은 상담이 당일 취소되어, 상담사의 효능감 및 내담자의 상담의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마음안심버스 - 마을안심버스는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찾아가는 서비스 형태임. 상대적으로 정신건강 케어의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임. - 다만, 현재 대상 중 어린이집, 직장(영등포 문화재단 포함) 등 서비스에 최적화된 형태보다는 단지 접근성이 좋은 대상을 발굴한 경향이 있음.	음. 당일 상담취소 예방을 위해 회기별 사전 알림을 강화해야 함. ○마음안심버스의 대상을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민 중심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음. 예컨대 장기화된 재난현장 등도 심리케어가 필요한 좋은 예일 것임. ○무인정신건강검진기의 활용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관련 캠페인과 연계하는 방안 등 서비스의 유기적 연계 및 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함. 이를 통해 검진인원 증대 및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 인식 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무인정신건강검진기 - 무인정신건강검진기 위치가 타임스퀘어 등 쇼핑몰, 교회 등에 설치 되어있으나, 적극적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함. 기기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다각적 활용을 모색할 필요성 있음.	
18	12.4. (월)	김지연	[직원 심리상담서비스 운영 강화를 통한 조직 내 심리적 안전체계 구축] ○ 교육후생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리상담서비스 사업의 2023년 예산액은 5천만원으로, 1회 10만원의 상담을 총 500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11월 주요 업무보고를 기준으로 총 49명이 179회의 심리상담을 실시하였음. 인당 총 6회까지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으나, 현재 평균 이용 회기는 3.7회로 단기상담 위주의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목표대비 저조한 실적을 보임. ○ 사업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1천만원 증액한 총 6천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최대 이용회기도 10회로 확대하였으나, 2023년 이용 내역을 보았을	○ 심리상담서비스의 홍보 활성화 필요. 단순히 온라인 홍보물로 그칠 것이 아닌, 직원들의 비밀보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방식이 필요함. 캠페인 형식이나 체험형식의 홍보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서비스를 진행하는 위탁업체에서 제출하는 스트레스 검진 보고서 및 상담서비스 이용의 양적, 질적 통계를 조직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적 환류 과정이 필요함. ○ 공무원의 조기퇴직 및 공직사회의 세대간 갈등 해소 및 직장내 문화 개선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직원 개개인의 심리안정은 단지 후생복지 차원을 넘어서는 인사 관리의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볼 수 있어 적극적인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때, 서비스 횟수와 이용한도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음. ○보수적인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를 고려할 때, 심리상담서비스의 저조한 이용 실태의 원인을 단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부족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 상담의 비밀보장 및 필요성이 충분히 인지될 때만이 직원들의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홍보 및 심리상담에 대한 필요성 인식 등 서비스 인지도를 함께 고양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직장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서비스는 직원 내면의 고충을 해결하여,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서비스라 볼 수 있음. ○그러나 본 서비스에 대한 홍보는 온라인 홍보 등에 그쳤으며, 서비스 초기에 실시한 온라인 조직정신건강 진단(2023.04.07. 보고)은 381명으로 총 인원대비 약 27%로 미미한 수준임. ○공무원의 장기근속이 당연시되던 조직문화에서, 최근 비교적 하위직 공무원(8~9급)의 조기퇴직 비율이 늘고 있어, 개별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심리케어 뿐만아니라 큰 틀에서의 적극적 조직문화관리가 필요하다 사료됨.	
19	12.4. (월)	김지연	[공무직 처우 개선 및 노사협의 회 이행 필요] ○ 현재 영등포구청에는 189명의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26일 노사협의 회가 구성되었음. ○ 2022년 9월에는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발의되어 통과되었으며, 후생복지 및 각 종 근로 환경에 대한 차별없는 대우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였 음. ○ 그러나 공무직의 경우, 그동안 우수한 업무 성과로 표창을 받 는 경우에도 공무원 표창과는 달리 별도 부상을 지급 받지 못 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 는 실정임. ○ 2023년 10월 개최된 정기 노 사협의 회 회의는 서면으로 개최 되었으며, 근로자의 날 공무직 표창 수여 시 문화상품권을 지 급하는 것(5명x200천원=1,000	○ 노사협의 회 안전 중 가결된 사 항은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임. ○ 매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 해야 할 것임. ○ 서면회의 개최는 지양해야 하 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임. ○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 주민에 게 봉사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을 위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 해야 함을 잊지 않고,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노사협 의회를 운영해줄 것을 요청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천원)과 공무직 방문간호사 체련대회 지원 예산(20명x20천원=400천원) 확보가 가결되었음. ○노사협의회는 매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최횟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20	12.4. (월)	김지연	[도림동 자치회관 유휴공간, 대 주민용 시설로 적극 활용 필요] ○도림동 자치회관은 3층에 위치한 체력단련실을 2022년 11월 폐쇄 결정한 이후, 2층에서 운영하던 자치회관 프로그램 또한 미운영하기로 2023년 1월 결정하면서 전체 건물이 사용되지 않고 있음. ○구청은 유휴시설이 된 자치회관 건물 활용을 위해 부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 중인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확실시되고 있음. ○도림동 자치회관 건물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완료 시점인 2025년 상반기까지, 약 2년 이상 유휴공간으로 미사용되는 상황임.	○우선 자치회관을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는 것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올해 1월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치회관 건물이 미사용된다는 점은 행정 편의적이며, 주민의 복리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임. ○생활문화센터 조성까지 유휴공간으로 두는 것보다는, 원래 목적대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자치회관 건물이 활용되어야 할 것임. ○더 나아가, 영등포구 관리하에 있는 시설이 6개월 이상 장기간 미사용되는 경우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부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유휴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지만,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수요조사를 통해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단기간 동안만이라도 인근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람. ○덧붙여, 기존 목적이 자치회관과 같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 경우에는 타 부서 수요조사를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대주민용 시설로 이용하는 것을 우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함.
21	12.4. (월)	김지연	〔문래동 공공공지 가림막 정비 관련 예산 집행 부적정〕 ○2023. 5. 시행된 문래동 공공공지 가림막 정비 안전관리 용역에 대한 예산이 “영등포아트스퀘어 운영”을 세부사업으로 하는 사무관리비로 집행되었음. ○문래동 공공공지 가림막 정비 안전관리 용역은 2023년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채 전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사업 추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비비로 집행하거나, 중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향후 예산편성도 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한 무리한 시행을 지양하고, 긴급하고 중대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 추가경정 예산편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투명성, 합리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어야 함. ○또한, “영등포아트스퀘어 운영”은 문래동 공공공지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세부사업이고, 영등포아트스퀘어 운영을 세부사업으로 하여 예산편성된 사무관리비의 산출내역에 본 용역 사업을 포함할 수 있는 여지도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본 용역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은 예산편성 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정함.	
22	12.4. (월)	김지연	[여의도 봄꽃축제 관련 예산 집행 부적정] ○2023. 4. 4. ~ 9. 개최된 제 17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와 관련하여 영등포예술인협회사단하 7개 협회 및 영등포문화재단에 민간행사보조 비목으로 총 3125만원이 교부되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98호, 2023. 7. 28. 발령·시행) 별표3, 「2022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및 「2024년도 영등포구 예산	○본 축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의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중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① 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여 직접 시행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행사운영비 등을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그렇지 아니하고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금지되며, ②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여야 함.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는 영등포구가 주최하고 영등포구와 영등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영등포구가 사실상 주관하여 직접 시행하는 행사에 해당하므로, 관련 지침에 따르면 민간행사보조 비목으로 편성, 집행하는 것은 금지됨. ○따라서 해당 부서가 본 축제를 세부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를 통계목으로 하여 만연히 보조금을 집행한 것은 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부적정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3	12.4. (월)	김지연	[영등포아트스퀘어 운영 부실] ○영등포아트스퀘어 운영에 대한 2023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10. 31. 기준 52.4%에 불과하여 상세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운영 부실이 드러남. - 첫째, 근로자의 잦은 퇴사로 인하여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음. - 아트스퀘어의 운영 인력은 센터장 1명, 주무관 1명, 기간제 근로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최근 1년간 근무기간이 2~3개월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음. - 둘째, 월별 관람객 이용률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되어 공간 및 시설 활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함. - 아트스퀘어 월별 관람객 이용률 통계에 따르면 입장객 수 기준 월별 편차가 최대 3배가 넘는데, 월별 전시·공연 내역과 비교해 보면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은 콘텐츠 유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잦은 인력 공백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 할 것을 요구함. ○양질의 콘텐츠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입장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결국 담당 인력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아트스퀘어에 대해 고민하며 아트스퀘어에 적합한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하여 공연·전시하는 것이 아트스퀘어 운영의 핵심임에도, 아트스퀘어 운영의 실태는 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나아가 영등포 타임스퀘어라는 입지적 장점을 등에 업고도 면적 1,187㎡ 규모에 불과한 공공문화복지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운영에 부실함이 드러났다면, 문래동 12,947㎡ 면적에 현재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립문화시설 운영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음.	
24	12.4. (월)	김지연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부적정] ○ 본 영화제는 2023년도 예산이 전혀 편성·집행되지 아니한 채 2023. 9. 14. ~ 19. 개최되었고, 담당부서는 2023. 10. 5. 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3-1809호로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영화제가 안정적으로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집행을 재고하되,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함. ○ 조례에서 부여한 영화제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한 위원장의 권한으로써 위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상기 지적된 사항들을 비롯하여 영화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논의할 것을 요구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2023년도 지원이 전면 중단된 것은, 구와 함께 영화제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적발을 이유로 함. ○ 조례 폐지의 경우, ①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의 형평성 문제, ② 기존 문화예술 진흥 조례와의 중복 문제, ③ 위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업 실효성 문제를 이유로 함. ○ 하지만 영화제에 대한 위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정함. - 첫째,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단지 특정 단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가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이자 유일한 문화도시인 영등포만이 가진 문화적 특징과 다양성을 꽃피우는 토양으로서 가치를 지닌 영화제 자체에 대한 존립 및 지원의 근거임. 조례가 가진 이러한 중대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부수적일 수 있는 이유만으로 이를 폐지하고자 시도한 것은, 영화제 조례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집행 결과임.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둘째, 지원 중단의 경우, 유사한 원인으로 보조금이 환수되었을 때, 개전의 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직후부터 지원을 중단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데,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조치는 합리성 및 형평성을 결여하였음. - 셋째, 앞서 지적된 두 가지 사항은 영화제 운영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므로, 각각의 조치에 앞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영화제 조직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요 사항이 자문·협의될 수 있도록 운영하였어야 함에도 전혀 그러한 선행 조치가 없었음. ○ 이와 관련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영화제에 대한 시·구비가 확보되어야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① 영화제는 예산 확보에 따라 창설되거나 개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 자체를 근거로 존립하는 것이며, ②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위원회는 “영화제 추진 시기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협의하는데, 이러한 사항은 예산확보와는 별도로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므로, 결국 담당 부서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5	12.4. (월)	김지연	[소관부서 미지정 건의 민원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처리 절차 설정 필요] ○ 우리 구의 주민이 피해를 겪고 있다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가 미지정되어, 대응 및 구 차원의 후속조치 논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음. ○ 2023년 1월부터 신안산선 공사와 관련하여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민들이 피해 민원을 접수했음. ○ 이와 관련하여 10월 11일 신안산선 피해 관련 주민대책 간담회가 도림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전날까지도 주관부서가 결정되지 못하였음. ○ 전날 구청 감사담당관 민원실에서 개최된 신안산선 민원 대책 회의에는 교통행정과, 주택과, 도로과, 건축과, 감사담당관이 참석했지만, 소음·진동에 대한 민원은 환경과에서 대응하기로 정했음. 뿐, 공사 관련 민원은 구청 주관부서를 정하지 못해 사업추진 기관인 국가철도공단으로 즉시 이첩하는 것으로 결론 지음.	○ 구청에서는 복합적으로 여러 사안이 겹쳐 있는 등 주관부서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 결정지을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 또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소속부서의 지정이 어려운 민원이 종결까지도 부서 지정이 되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민원 처리 주관부서의 지정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의 특성상, 회의소집 및 부서지정, 민원처리 방안 결정 등의 사안에 대한 소요시간에 대한 명시가 반드시 필요할 것임.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간담회 당일에도 특정 부서가 아닌 민원실장이 간담회에 참석하였으며, 소속부서 지정이 되지 않은 민원건 처리에 대한 프로세스 부재로 주민들의 민원 및 불만에 대한 강도가 증폭되는 양상을 보임.	
26	12.4. (월)	김지연	[언론사 보도 정정 요청 부적정] ○ 영등포구가 언론사에 부정 보도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 부서의 주무관 및 팀장이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해 즉시 유선상으로 언론사에 보도 정정을 요청하고 있음. ○ 우선 부정 보도에 대한 정정 요청은 엄연히 담당 부서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기안, 검토, 결재의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당연함에도 현재 업무 처리는 전혀 그러한 체계로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행정업무 처리의 기본 원칙에 반하여 부적정함. ○ 담당 부서의 입장에서는 부정 보도에 대하여는 신속한 정정이 필요하므로 업무 특성상 처리 방식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음. ○ 부정 보도에 대한 정정 요청 업무는 단순 오탈자 정정과 같은	○ 언론사 보도 정정 요청 업무의 처리 방식을 원칙적으로는 기안, 검토, 결재 등의 기본적인 행정업무 처리 방식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우선 시행 후 즉시 사후 검토·결재받도록 하는 등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경우를 제외하면 구 정책과 관련한 엄중한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념적·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관련되거나 언론 간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오히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업무 처리가 더욱 요구됨. ○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도, 우선 신속한 정정 요청을 시행하되 사후에 즉각적인 검토 및 결재를 거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행정의 달성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됨.	
27	12.4. (월)	김지연	〔풍수해 보험 가입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피해지원금 지급 과정의 문제〕 ○ 2023년 7월 풍수해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00만 원의 긴급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풍수해 보험 가입 34개소의 소상공인들의 경우, 이 중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급받지 못함. ○ 구청의 안내에 따라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은 수해복구에 필요한 보상을 기대했을 것이나 연말인 12월이 된 시점에도 보험금과 재난지원금을 모	○ 「풍수해 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풍수해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급에 행안부, 서울시 검토가 필요하더라도 지연 기간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 필요함. ○ 풍수해 보험 가입 소상공인이 받는 피해지원금이 보험 미가입 소상공인보다 적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역차별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피해지원금 지급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함. ○ 풍수해 보험 사업 주무 부서인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두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짐. ○ 이에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의 경우, 구청의 홍보로 풍수해보험을 들었으나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는 인식이 생겼으며, 이는 구청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짐. ○ 「풍수해 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 3(재난지원금에 대한 차액 지원)에 의거, 행안부 및 서울시의 지원금에 대한 차액 지원 검토과정으로 인해 지급 시기가 늦춰짐. ○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피해 소상공인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였으며, 민원의 대상이 되었음.	도시안전과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풍수해 보험 가입을 단순히 독려하는 것이 아닌, 소상공인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함. ○ 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소상공인 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공표해야 함.
28	12.4. (월)	김지연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 실태조사’ 계획을 명확한 사유 없이 ‘이전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으로 변경 집행〕 ○ 2023년 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 실태조사 용역’ 대해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용역비 8천만원을 승인함.	○ 의회 심사로 가결된 예산안과 다른 연구용역을 수행해서는 안 됨. ○ 연구용역 주제를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변경 사유에 대한 소명 필요함. ○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 이전을 반대하거나 어려움을 표하는 소공인에 대한 추가 실태 조사 및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그러나 2023년 승인된 예산은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 이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변경 추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의회에 사전 보고는 없었음.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전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은 같은 용역이라 볼 수 없으며, 특히 집행부에서 추진한 용역은 ‘이전’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태조사’라는 중립적 의미와는 다름.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에 대한 이전’자체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연구의 일부 사항도 아닌 제목 자체가 변경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존중하지 않는 집행이라 볼 수 있음. ○또한 포괄적 의미의 실태조사에서 다루어졌어야 하는 이전을 반대하거나 어려움을 표하는 소공인에 대한 내용 등을 간과한 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용역 집행은 문제가 있음.	지원 방안 마련 필요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9	12.4. (월)	김지연	[영등포구 상공회 보조금 집행의 체계적 계획을 통한 상공회 회원들의 안정적 소속감 및 체감 혜택 증진 도모 필요] ○영등포구 상공회의 회원들은 20년의 역사 동안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각종 경기침체에도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소속감을 바탕으로 한 상부상조로 시장을 개척하여 영등포구 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됨. ○영등포구는 공적 보조금을 통해, 상공인들의 안정적 소속감 고취와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실질적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특히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영등포구 상공회가 사단법인화를 앞두고 있어 보조금 지원의 규모 및 집행의 내용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띠다고 볼 수 있음. ○2023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기존에 계획했던 ‘해외전시장 지원’, ‘SNS마케팅’사업 취소 및 ‘실무교육’사업은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이 보조금을 영등포구 상공회 20년 역사를 정리하는 의미의 ‘상공회 20년사 출간’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음.	○2024년도 상공회 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 증액된 예산이 사단법인화된 영등포구 상공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2023년 계획되었던 ‘SNS 마케팅’, ‘실무교육’ 등과 같은 실질적으로 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임. 또한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대비 및 불황극복을 위한 다각적 아이디어를 통해 상공인들의 체감 지원 혜택을 높일 수 있어야 하겠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2024년 사단법인화를 앞둔 상공회가 ‘상공회 20년사’를 출간한 것은 상공회의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상공회 회원들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증진하여, 더 공고화된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작업이었다고 여겨짐. 또한 적절한 예산 변경 과정을 거쳐 시의적절하며, 의미있는 일이라 볼 수 있음. ○ 다만 당초 계획되었던 상공인 대상의 교육 및 시장 진출 지원 등의 혜택이 금년도에 돌아가지 못하게 된 점은 아쉽게 여겨짐. 최초 계획을 수립했을 때에 상공인들의 수요와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을 터이며, 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혜택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음. ○ 따라서 동일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사전 계획이 필요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세워질 필요가 있음. 그러나 2024년도 상공회 보조금은 5000만 원으로 증액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예산서에 명시되지 않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0	12.4. (월)	김지연	[용역비 증가와 관련한 일상감사 필요성] ○ 2023년 계약 심사 추진계획에 따르면, 구 자체사업의 경우 공사 및 용역은 1천만원 이상, 물품은 5백만원 이상의 경우, 우리구에서는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 자체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설계변경과 관련한 구 자체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1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 금액의 10%이상인 경우'로 지정하고 있음. ○ 현재 계약심사 추진계획에 의하면, 설계변경 심사의 경우, '공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공사가 아닌 '용역'이나 '물품'의 변경의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의 심사를 받지 않음.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기준에 준용하여, 우리구의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는 하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의 목적을 고려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의 개정을 통해, '공사'뿐만아니라 '용역', '물품'에 대한 설계변경에도 일상감사를 적용할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때, 우리구의 실정에 맞추어 심사 기준을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우리구의 다수의 사업이 용역 등 계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용역 설계변경에 대한 일상감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의 낭비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사료됨. ○ 2023년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계약 금액의 약 2배의 변경계약을 진행한 사례도 발견됨.(2023년 봄꽃축제관련 문화체육과 예산의 질서유지 용역은 당초 23,924,000원 계약에서, 44,190,000원으로 설계변경된 사례가 있음)	
31	12.4. (월)	김지연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실태조사 필요]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 대응 지침 제19조(재발방지 조치 등) 따라 조직 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함. ○ 영등포구청은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과 직장	○ 영등포구청에서는 영등포문화재단의 조직문화실태조사를 모범적 사례로 삼아, ‘조직문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조직문화 관리를 할 것을 요청함. ○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조직 내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직장 내 다양한 갈등 및 괴롭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내 괴롭힘 사건 신고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 상담창구 운영, 처리 절차, 구제 방안 등에 있어 기타 사안에 대한 신고 및 인사 상담 과정과 큰 차이가 없음. ○아울러 보수적인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및 민간기업과는 달리 이직이 자유롭지 않은 환경적 영향 내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은 발생 빈도와는 별개로 피해자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일 것임. ○영등포문화재단 뿐 아니라, 타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적극적 조직문화 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 구는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사관리에 대한 근거가 되는 기초 통계가 부족하다고 사료됨. ○2022년 하반기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지자체 조직문화진단 설문은 진행한 바 있으나,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관련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 조직문화관리까지는 이어	고,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영등포구청의 조직 내 문화, 갈등, 인사적 개입의 필요성과 관련한 통계를 연간으로 누적할 필요가 있음.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제도의 설계, 인사 상담 및 교육 등 근거 중심의 조직문화 관리가 이루어질 토대를 마련해야 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세대간의 갈등 및 중간 관리자의 고충 등 다양한 인사문제가 존재하며, 이런 사소한 갈등의 내용과 양상을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32	12.4. (월)	박현우	[여의동 주민센터 건물 안전관리 관련] ○ 우리 구는 ‘중대시민재해 안전보 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2023년 5월9일~7월7일)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각 시설별로 개선권고사항을 전달받았음. ○ 개선권고사항에 따르면, 여의동 주민센터 건물에 위치해 있는 구립여의동어린이집 시설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지만(연면적 430㎡ 이하), 주민센터 건물에 입주해 있으므로 주민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전체 건물 안전관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음. ○ 여의동주민센터 건물은 복수 기관 입주 시설로 계획 수립, 점검 등에 모든 기관이 참여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임.	○ 복수 기관 시설이 건물에 입주해 있으므로, 협업을 통해 건물 안전관리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함. ○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수시 점검사항을 분담하여 실시해야 할 것임. ○ 여의동 주민센터 건물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에 해당되지 않지만, 건물 단위의 통합 관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3	12.4. (월)	박현우	〔‘우수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사업계획 변경의 적절성 평가 및 재개최 필요〕 ○ ‘우수 중소·벤처기업 박람회’는 여의도 봄꽃축제 행사장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2019년까지 개최됐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 19로 미개최됨. ○ 2023년의 경우 ‘사업성격 상충’과 ‘개최지 불만 민원’의 사유로 ‘국내 유명 전시회 참여 지원’으로 사업을 변경함. ○ 상반기 2개, 하반기 4개 업체 대상으로 전시회 참여 부스 비용 등을 지원했는데, 참여 업체 수가 매우 적어 사업 실효성에 대해 검토 필요함.	○ 전국에서 연인원 500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여의도 봄꽃축제에서 박람회를 개최했을 경우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클 것으로 예견됨. ○ 사업계획 변경시 ‘우수 중소벤처기업 박람회’와 ‘국내 유명 전시회 참여지원’의 사업평가를 매출액, 판로개척, 만족도, 예산 등으로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해 2024년도에는 박람회가 재개최 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함.
34	12.5. (화)	박현우	〔문래동 공공부지 매립 폐기물 대응의 건〕 ○ 최근 문래동 공공부지에 추진 중인 주민친화 정원 조성사업 공사의 굴토과정 중 지하 1m 부근에서 두께 약 1m 정도의 매립 건설폐기물이 발견되었음. ○ 이는 텃밭을 제외한 전체 부지면적에 약 1/3에 해당하는 부지에 해당하며 원인 미상의 매	○ 해당 토지는 조성사업 계획상 토지 이용 주민들의 신체에 토양이 접촉되는 시설이 많고, 어르신과 아이들의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차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접근해야 할 것임. ○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차단으로 인한 오해와 불신은 구청과 주민 간 정치적 갈등 비용을 양산하고, 신뢰 행정을 저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립 폐기물은 약 5천여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영등포구는 매립 폐기물 처리와 관련 10월 6일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로부터 육안검사 후 ‘점질토’로서 매립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토사의 반입불가” 공문을 수령하였음. ○폐기물처리용역을 11월 15일 착수함에 따라 조성사업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이 종전 2023. 11. 25. 에서 2024. 4. 15. 로 연기되었음. ○(건축폐기물 매립의 가능성 추론) 여기서 문래동 공공부지에 어떻게 건설폐기물이 매립되었는지 합리적 추론을 해 보면, (1) 기부채납 당시 방림방적에서 이미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제공했을 가능성, (2) 인근 LG자이 아파트 건축 당시 폐기물이 매립되었을 가능성, (3) 텃밭 조성 성토 과정에서 매립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확인결과 이미 텃밭 조성 당시 원래의 토지에 50cm 정도 성토하여 텃밭을 조성하였기에 두 번째, 세 번째 가능성은 희박하고, 기부채납지 자체에 이미 건축폐기물이 매립	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본 사안에 대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와 공유를 최우선 원칙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주민의 생명과 안전, 주민과의 신뢰 구축을 위한 세부 지침으로 첫째, 도시텃밭 토양 오염 조사를 실시하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한 유관기관에 요청하여 신뢰성 있는 토양오염 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해야 할 것임. ○둘째, 아직 건축폐기물에 대한 귀책 사유를 논하기에는 이를 수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기부채납자인 방림방적에 대한 법적 배·보상 청구 여부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임. ○셋째, 향후 영등포 예술의전당 건립 추진 시 본 사항이 미철 행정적·법적 영향력을 적극 행정 차원에서 검토하여야 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시민단체 문제제기) 12월 4일 시민단체인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에서는 (1) 유해폐기물이 텃밭 아래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를 이용한 주민들이 건강 침해를 받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 (2)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대지에 매립되어 오랜시간 동안 방치된 점, (3) 해당 폐기물이 특수폐기물인 경우 별도의 과정을 거쳐 처리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음. ○(시민단체 문제제기에 대한 구청의 대응) 이에 담당 부서인 영등포구 푸른도시과 공원조성팀은 시민단체와 함께 현장방문을 추진하였음. (1) 지역경제과는 매년 토양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 현재로서는 건축폐기물 매립이 언제, 어떤 방식에 의해 매립되었는지에 대한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며 (3) 해당 건축폐기물은 건설폐토사, 폐콘크리트로 법적인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방식으로 반출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5	12.5. (화)	박현우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른, 영등포구 조례 개정, 용어 및 직제 변경 요구의 건(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동행센터)] ○서울시에서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동 조문 내용을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23년 7월 18일에 흡수·개정함. ○이에, 우리 영등포구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이라는 표현을 빨리 변경해야 하나,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도 아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용어가 남아있음.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도 직원 업무 분장에 ‘동행센터’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표현이 혼재되어있고, 방문 자동차 등 다양한 곳에 찾동 표기가 남아있음. ○더불어, 동행센터의 제대로 된 추진을 위해 동주민센터 또한, 조직센터 모형을 갖추어야 함.	○동행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등포구 조례를 개정해야 함. ○관내 미정비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동행센터’로 정비해야 함. ○사회복지직렬 복지팀장이 기배치된 영등포본동·영등포동·당산2동·신길1동·신길5동·대림1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사회복지직렬의 복지팀장이 미배치된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렬 복지팀장 직제 편제 검토를 요구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서울시에서 배포한 동행센터 매뉴얼 상 동행센터 추진을 위한 동주민센터 서울시 권고 모형은 복지1팀, 2팀 중 최소 1팀 이상을 복지 직렬 팀장으로 배치하여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 영등포구 각 동을 살펴보면, 18개 동 중 복지 직렬 팀장이 있는 동은 단, 6개 뿐임.	
36	12.4. (월)	양송이	〔‘동물보호팀’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최근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따라 영등포구는 2023년 7월 1일부로 ‘동물보호팀’을 신설함. ○기존 ‘생활경제팀’을 ‘동물보호팀’으로 명칭만 변경했을 뿐, 주요 업무 및 조직 구성은 이전과 동일함. ○2023년도 동물보호팀의 구비편성은 0%로 집행부의 정책적 무관심이 염려됨.	○동물등록제 확대를 위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지도원 충원 필요함. ○일 평균 10건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외부출장 민원도 고려해 민원 전담 인력도 충원 필요함. ○영등포구에 필요하고 적합한 자체사업 개발이 필요함. ○타 자치구 동물복지 담당 인력의 경우 최대 5명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참고해 우리구에도 반영 필요함.
37	12.4. (월)	양송이	〔적극적인 국·시비 사업 계획과 예산 확보 필요〕 ○최근 3년 동안 국·시비 요구액이 감소하고 있어 집행부의 원활한 사업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	○기획예산과는 예산 총괄부서로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국·시비 사업에 대한 현황을 조속하고 상세하게 파악해야함. ○국·시비 보조금 예산 확보를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최근 3년간 국·시비 요구액> (단위: 백만원) <table><tr><td></td><td>국·시비 요구액</td><td>예산확보</td></tr><tr><td>2022년</td><td>73,835</td><td>42,647</td></tr><tr><td>2023년</td><td>60,712</td><td>49,681</td></tr><tr><td>2024년</td><td>39,205</td><td></td></tr></table> ○ 기획예산과가 확보한 국·시비 사업 자료와 각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 자료가 상이함. ○ 국·시비 사업 신청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서울시 예산 요청 국·시비 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등 매칭사업 관리가 이원화되어 통합관리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황 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		국·시비 요구액	예산확보	2022년	73,835	42,647	2023년	60,712	49,681	2024년	39,205		위해 공모 사업 도전 등 적극적인 사업구상 및 추진 필요함. ○ 기획예산과는 영등포구 전체 예산을 기획하는 콘트롤타워로서 각 담당국에 적합한 국·시비 사업과 구비 사업을 균형있게 계획·추진해야함.
	국·시비 요구액	예산확보														
2022년	73,835	42,647														
2023년	60,712	49,681														
2024년	39,205															
38	12.4. (월)	양송이	[통·반장 제도 개선] ○ 통장의 경쟁률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통장 선출이 투명하게 진행되길 원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영등포구 각 18개 동에서 진행되는 통장 선출은 세부사항을 동장이 정할 수 있어 각 동별로 상이함. ○ 그로 인해 어느 동에서는 심의위원 1명이 만점을 주면, 그 외 다른 후보자가 다수의 위원들에게서 좋은 점수를 받더라도 탈락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 통장의 공정한 선출을 위해 영등포구에서는 문제 발생 여지를 제거한 심사표를 마련해 각 동에 제공해야 할 것임. ○ 또한, 선출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통장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시에 작성해야 하는 회의록도 표준안 서식을 만들어 활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에 자기소개서를 포함해야 할 것임. ○ 반장 업무가 많은 지역 또는 주민에게는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한편, 영등포구 반장 위촉률은 2023년 11월 기준 58.5%이며, 반장 업무는 거의 없는 상황임. ○ 통장의 동행정을 보조하기 위한 역할로 반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반장 업무는 통장의 요청이 있을 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적인 업무 수행과 역할은 미비함. ○ 반장의 업무 지원사항 또한 동별, 통별로 상이함.	○ 예를 들면, 반장 업무 실적이 우수한 주민에게는 통장 지원 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임. ○ 담당부서는 반장제도의 활성화 및 적극 활용을 위해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반장 업무를 개발 및 선정할 것을 요청함.
39	12.4. (월)	양송이	[미래교육재단의 홈페이지 내용 부재 개선 필요 및 독자 사업 개발 촉구] ○ 구청은 구의회가 장학재단 조례 개정안(이사 정원을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을 통과시키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추가 선발하였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미래교육재단 홈페이지는 기존 장학재단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재단명을 변경했을 뿐 기초적인 사항인 연혁 등에서 변화된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기존의 영등포장학재단이 미래교육재단으로 재탄생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홈페이지 내용을 대폭 수정 및 추가해야 할 것임. ○ 단편적으로 미래교육재단의 홈페이지는 목표와 추진 사업 및 장학선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영등포구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우리 구만의 독자적이고 특별한 미래교육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기에, 적극적인 사업 개발 검토 및 추진을 요청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재단소개는 장학재단 내용에 국한되고 있으며, 특히 정관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지난 7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게시한 정관만이 있으며 변경된 정관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음. ○미래교육재단은 2024년에 출연금을 통해 기존 장학금 지원사업 이외에 미래교육과로부터 이관받은 ‘과학원리 체험교실 운영’, ‘과학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직업체험’, ‘학교 밖 방과후 학교’, ‘교육축제(포포페스타)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은 ‘해외선진과학 문화 체험 캠프운영’에 불과함.	
40	12.4. (월)	양송이	[영등포구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효율적 집행 및 개선 필요] ○2021년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은 28,771천원(집행률 96%), 2022년 집행잔액은 1,965,765천원(집행률 74%), 2023년의 집행잔액은 705,673천원(집행률 88%)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3차 지급의 경우 일부 학교를 통해 접수된 사업 수요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집행하였음. ○선심성 보조금 집행은 지양되어야 함. ○구청은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며,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교육경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2023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을 위해 영등포구청은 전년도인 2022년 9월 2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3월에 1차 보조금을 지급했음. ○ 이후 구청은 4개교에서 진행한 ‘공감스쿨데이’를 포함 2023년 5월 3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차 지급을 실시했음. ○ 집행잔액이 여전히 남은 상황이었으며, 구청이 ‘희망·행복 구민 간담회’를 진행하는 동안 추가적인 지원 요청을 접수하였기에 6개 학교의 8개 사업에 대해 3차 보조금을 지급했음. ○ 2023년 교육경비보조금은 총 3회에 걸쳐 지급되었지만, 집행률은 88%에 그친 상황임.	- 비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연간계획뿐만 아니라 3개년 또는 5개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률 및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별도 소통창구 또는 정기적인 회의 일정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학교 프로그램 신청 내역 변경이 필요함. 프로그램을 학교 대표 특색사업으로 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 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녹색어머니회 운영비는 지원 목록에서 제외해야 할 것임. 녹색어머니회는 주로 등하교 시간 교통 안전지도를 했던 것인데, 현재는 대부분 새싹수호천사가 지도를 하고 있음. ○ 학교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영등포구만의 특성을 살린 구특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 있음. ○ 예를 들면 스마트교실 구축, 교육정보화기기 보급, 과학실험기구 교체 등 과학실 환경개선,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첨단 과학기술기반의 과학교육 수업공간 및 시설 구축, 교육기자재 최신화와 학습카페 조성 등이 있을 수 있음. ○담당부서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효율적 집행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함.
41	12.1. (목)	이규선	〔국가 암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검진 독려〕 ○암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 진료 등을 지원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보건소에서도 암검진 미수검자에게 검진을 독려 등 다양한 암환자 관련 다양한 사업을 함. ○작년 기준 관내 국가 암검진 미수검자의 수는 82,165명임. 검진대상자의 수가 186,540명 대비 절반 수준임.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 미수검자수는 11번째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 중간도 안되고 있음. ○보건소는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암검진 법상 명시된 지자체장의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함. ○단순 보여주기 식의 알림메세지만 보낼 것이 아닌, 실효성있는 검진 독려 활동을 해야 함. ○또한, 중복 알림 수를 반영할 것이 아닌, 실제 미수검인원을 제대로 파악하여 제대로 안내해야 함. ○더불어, 고령층 등 건강 고위험자 중 미수검자의 경우 검진을 못 받는 실제적인 원인을 파악해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적극 노력하여야 함에도 암 진료를 위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42	12.1. (목)	이규선	[마약류관련 실태조사 실시해야] ○보건소에서 마약류 예방사업으로 다양한 마약류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음. ○마약류의 경우 단순 예방 교육 및 캠페인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임.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 34개 하수처리장에서 마약이 검출되었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영등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마약 사범 검거 수 7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마약류 남용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함.	○마약류 남용의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 관내 마약류 오남용 실태조사일 것임. ○지금과 같이 단순 예방 및 캠페인만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관내 하수도 점검 등을 통한 영등포구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치수과와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마약류 익명 검사에서 사용하는 마약류 검진키트 등을 활용하여 관내 하수도 점검을 실시해 관내 마약 위험 지역을 파악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실효성있는 예방사업을 실시하길 촉구함. ○이를 통해,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영등포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주기 바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3	12.1. (목)	이규선	[구청사 직원 커뮤니티 공간 시설 확충 추진] ○올해 11월과 12월 사이에 구청은 청사 직원들을 위한 50석 규모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였음. ○주거사업과에서 사용하던 공간을 직원 휴게공간으로 조성한 것으로, 안락의자와 테이블 등 가구와 편의시설 물품을 배치했으며, 바닥 보수와 도배 등을 통해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였음.	○고된 업무에 지친 청사 직원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한 구청의 결단을 칭찬하고자함. ○향후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해줄 것을 요청함. ○커피, 다과 등과 함께 담소를 즐길 수 있으며, 간단한 취사가 가능하도록 탕비 시설을 배치하는 것도 검토해주길 바람. ○또한, 불명 등을 할 수 있는 인터리어를 설치하거나 안마의자 등을 구비하여 단순한 휴게공간이 아닌 ‘힐링이 가능한 공간’으로 추가 조성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람.
44	12.1. (목)	이규선	[갑질·을질 예방 및 대응 방안 모색과 사례 공유] ○갑질·을질 관련하여 부서에서는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간부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 ○상반기에는 반부패 역량 자가진단을 실시하면서 갑질과 을질에 대한 내용도 다루었음.	○나날이 다양해지는 갑질·을질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각각의 사례에 대한 대처방안을 공유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함. ○조직 내에서 직원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추가 방안을 모색할 것.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여 현재 조직 내부의 갑질·을질에 대한 인식 상태를 파악할 것이며, 이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것. ○ 반부패 역량 자가진단 설문조사 관련하여 갑질·을질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다소 빈약하다고 보여지기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
45	12.1. (목)	이규선	[주니어보드 적극 활용] ○ 우리 구는 상호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위하여 조직 화합을 위한 세대별 모임으로 오픈채팅방인 ‘주니어보드와’ ‘미(美)주알고(古)주알’을 운영하고 있음. ○ 올해 주니어보드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만 운영했음. ○ 주니어보드와 미주알고주알은 모두 익명채팅방으로 운영되고 있음.	○ 올해 주니어보드는 인원 모집 및 구성에 필요한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운영은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정도로 단기간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음. ○ 조직문화 개선 분위기 형성을 위해 주니어보드 운영은 적극 권장되어야 할 부분임. ○ 내년에는 연중 활용 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별도 집중 운영기간을 마련해 운용하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 또한, 실효성 있는 운영 및 성과 확산을 위해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것을 요청함. 다만, 자발적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람. ○ 주니어보드와 미주알고주알은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모두 익명채팅방으로 운영된다 는 점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 하며, 신규 임용을 비롯해 인사 이동에 따라 채팅방을 새로 개 설하거나 추가 운용해야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 영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 청함. ○미주알고주알은 공직 경험을 기 반하여 다양한 사안에 즉각 대 응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슈 발생시 추가 채팅방 개설 등을 통해 이 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6	12.2. (금)	이규선	[사회단체보조금 불용 재발방지]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결정 액은 385,257천원(사업비: 298,696천원, 운영 비:86,561천원)이며, 24개 단체에 지원되었음. ○불용액은 15,680천원으로 3개 단체에서 발생하였음. ○2022년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 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재향 경우회는 단체원의 고령화로 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보조금시스템 사용과 회계처리 기준 숙지에 어려움을 겪는 단 체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대 면 교육을 실시하여 시스템사용 법 및 회계처리 기준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 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단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 도록 계속해서 지원해야 할 것 임.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금시스템 사용이 어려워 사업을 최종 미신청하였고, 여성단체연합회의는 단체운영 종료로 이유로 사업 포기, 함께이룸 중증장애인지원센터는 전임 회계담당자가 퇴사 후 공식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2024년 각 개별부서에서는 보조금 사업 수행 시에 담당자가 좀 더 세심하게 단체 사업을 검토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며, 계속해서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함.
47	12.4. (월)	이규선	[아동·청소년 과학문화사업 활성화] ○ 미래교육과는 영등포를 과학교육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아동·청소년에게 과학문화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난 3월 보건복지부의 신속한 사회보장서비스 신설 협의를 위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 과학문화기관이 전무한 우리 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생각해봤을 때, 과학 관련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발전적인 시도라고 생각됨. ○ 하지만 단순히 과학관 전시·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데 그친다면, 기대효과는 우리가 의도하는 것의 절반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함. ○ 이용권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더 나아가 융합형 과학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사업형태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것.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8	12.4. (월)	이규선	[아트홀 관련 예산 편성 부적정] ○영등포아트홀은 건물뿐만 아니라 물품 또한 노후화되어 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소모되고 있고, 출연자·관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 ○특히 아트홀에 설치되어 있는 빔프로젝터의 경우 내구연한의 도과 시점으로부터도 8년이나 지나 원활한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이용자가 대관 시 불가피하게 1일 약 150~2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하고 별도로 외부에서 기기를 대여하고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공연시설은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아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에도, 최근 하반기 안전점검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파악됨. ○실제 최근 무대 천장의 이동장치 브레이크패드가 마모되어 공연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문화재단 예산안	○아트홀 운영과 관련하여 공연장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예산 투입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어, 이용자의 안전, 제공 서비스의 품질, 비용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편성에서 삭감되었는데, 행사 관련 사업비를 삭감할 수는 없으니 설비 교체 등 예산을 삭감된 것으로 파악됨. ○ 문화재단이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은 한 해 동안 무수히 많으나, 아트홀의 필수 설비 및 물품은 유효적절한 유지·관리로써 수년간 무대의 안전과 퀄리티를 확보할 수 있고, 과다하게 지출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문화재단의 예산편성은 합리적이지 않아 부적정함.	
49	12.4. (월)	이규선	[지식활동 학습동아리 및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필요성] ○ 지식활동 학습동아리 참여도가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2018년, 2019년도에 비해 매우 저조함. ○ 2023년도 상반기 제안심의회 결과 공무원 제안은 총 20건이었으며 모두 창안등급으로 채택되지 못함.	○ 2024년도 학습동아리 모집을 연초부터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 독려가 필요함. ○ 제안 및 실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보상체계 재정비를 통해 자율적인 참여 동기 부여가 필요함.
50	12.4. (월)	이규선	[영등포아트스퀘어 운영 개선 필요] ○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3년 영등포아트스퀘어 월 평균 입장객은 6,131명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일 평균 2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서,	○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가장 번화한 구역을 중심으로 영등포아트스퀘어까지의 동선에 입장객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홍보수단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변화한 대형 쇼핑몰인 영등포 타임스퀘어라는 입지조건에 비해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실제 현장 혼잡도 및 온·오프라인 인지도 또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는 타임스퀘어 내·외부로부터 아트스퀘어에 이르는 동선 및 출입구가 명료하게 노출되어 있지 않고,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만 임시로 운영되고 있어 방문자 수 800명대에 그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258에 그치는 등 온라인 접근자 수도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으로 분석됨.	
51	12.4. (월)	임헌호	[청사(본관, 보건소, 별관) 및 직원휴양소 관리 철저] ○전국에서 빈대 출현 및 확산에 대한 공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영등포구 주민과 직원이 이용하는 청사 시설 및 물품에 대한 방역 및 소독 추진현황을 확인함.	○직원 및 주민 이용하는 물품을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철저한 방역 관리를 할 것. ○빈대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원 이용 청사(본관, 보건소, 별관) 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직원들의 건강 및 보건사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또한, 구에서 직원휴양소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빈대 등 현안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건 관련 이슈 등도 발생 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2	12.4. (월)	임헌호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적극 활용 및 지적사항 재발 방지 노력할 것]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2023년 총 4회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하계휴가 대비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집중적으로 발견되었음.	○특별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된 것에 아쉬움이 남지만 이러한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미리 살펴보고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며, 부서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할 것. ○설명절 대비 점검에서 지적되었던 비상연락망 현행화는 다시 한번 공지를 통해 이행을 재확인할 것을 요청하며, 제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폭설 예상되는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대비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 ○각 부서에서는 지적사례의 공유를 통해 유사한 문제가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요청함. ○특히 부서주의 처분을 받은 해당 부서에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지적사항이 재차 적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함.
53	12.1. (목)	임헌호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관리 철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한 인건비 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체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주간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등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 취지에 벗어나는 인력 지원에 대한 예산 신청은 불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선유도서관은 이 사업을 통해 야간개관 인건비를 보조받고 있음. ○ 선유도서관은 22년 8월 스페이스T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5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내년 1월 재개관을 예정으로 함. ○ 선유도서관 근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은 5월과 6월을 만료로 하고 있었으며, 5월부터 리모델링으로 인해 휴관을 했기 때문에 2달간의 근무 및 야간개관 인건비 보조와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음. ○ 담당부서에서는 야간개관 인건비 지원 관련하여 서울도서관을 통해 문체부에 문의를 하였으며, 선유도서관 기간제근로자를 타도서관에 이동시켜 근무하게 하였음.	가하며 또한 리모델링 등으로 휴관 및 야간 운영 중단 예정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신청하게 되어있음. 또한, 사업 계획 변경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 담당부서의 대처로 근무자 운용 및 야간개관 인건비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 ○ 다만, 서울도서관 및 문체부와 의 사전 조율을 통해 선유도서관 기간제근로자를 리모델링 기간동안은 타도서관에서 근무하게 하고, 재개관 이후에는 다시 선유도서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설정할 여지도 있었다고 생각됨. ○ 현재 2월로 재개관이 연기된 점을 고려했을 때, 일정변동에 따른 인력 확보 문제와 근로자 계약기간 장기보장 등을 감안한다면 이들을 계속해서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함. ○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 즉 야간 개관은 낮 시간대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한 사업임.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담당부서에서는 계속 사업으로 국시비를 지원받아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챙겨주길 바람.
54	12.4. (월)	임헌호	[무인발급기 운영 개선] ○ 민원실을 찾아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 종이영수증 발급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와 카드단말기에서 종이영수증 발급 여부를 민원인이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임. ○ 점검을 통해 민원실 카드단말기는 설정 변경을 통해 종이영수증 출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인발급기는 잦은 오류로 인해 영수증 발급을 막아둔 상태였으나 향후 조치할 예정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에 우리 구도 역시 적극 참여해야 하며, 작은 것부터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됨. ○ 종이영수증을 민원인이 선택 발급할 수 있도록 해당 기능을 활성화할 것. ○ 또한, 종이영수증 미발급 이외에도 전자영수증 발급도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됨. ○ 무인발급기 및 통합발급기 민원 처리에 있어서 전자영수증을 민원인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람. ○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능하다면 즉시 조치해주길 바라며, 기기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향후 순차적인 개선을 추진해주길 바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5	12.4. (월)	임헌호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우리 구는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용역(2023년 5월9일~7월7일)을 실시했으며, 각 시설별로 개선권고사항을 전달받았음.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는 7,029.11㎡로 규모가 상당한 복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순환보직의 행정직 공무원이 청사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한편, 해당 시설에는 동주민센터를 비롯하여 어린이집과 작은 도서관이 입주해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도 있음.	○개선권고사항을 향후 안전계획 수립 등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함. ○건물규모가 상당하기에, 건물관리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업무 세분화 및 담당자 증원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 있음. ○주민센터와 입주기관이 모두 시설관리에 참여해야 안전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할 수 있기에, 함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립된 안전계획을 공유 및 수시점검하여 철저한 안전관리에 임해주기를 바람. ○건물 내 공영주차장은 중대시민재해 제외대상시설이지만, 시설 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56	12.4. (월)	임헌호	[공공복합청사 개보수 계약 관련] ○양평2동주민센터 누수 관련 개보수공사에 있어 시공업체명은 ○○유리였으며, 타견적서의 업체명도 □□유리였음. ○업체명에서 해당 공사에 대한 자격이 부재해 보이는 문제가 발견됨.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공복합청사 개보수 계약업체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명으로 인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구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앞으로는 동청사 등의 개보수 공사계약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업체명 외에 별도 비고란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을 통해 전문성과 공사 경력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람. ○ 덧붙여, 개보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전문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참여하는지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줄 것을 요청함.
57	12.4. (월)	임헌호	[주민자치위원회 전환에 따른 지원 강화 및 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현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가 12월 16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구청은 2023년 9월 주민자치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 각 동별로 논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것을 요청했음. ○ 그 결과 기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을 선택한 곳이 10개 동이며, 기존 6개 동을 포함하면 총 16개 동이 12월 17일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임. 한편,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곳은 2개 동(양평1동, 대림3동)만이 남았음. ○ 한편, 2023년 10월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가 주민자치회를 선택했으며, 4개 구는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 조직 변동에 따라 지역사회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적응기가 필요하므로 구청의 지원 강화가 요구됨. ○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한 10개동이 앞으로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진행사항 등을 의회에 별도 보고해주길 바람. ○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2개 동 또한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해 사업을 발굴 및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함. ○ 또한,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보강하여 추진해주길 바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체제를 유지, 나머지 6개 구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이원화하고 있음. ○이원화 상태인 6개 구 중 1개 구(광진)는 주민자치회로, 4개 구(종로, 송파, 용산, 마포)는 주민자치위원회로 2024년 전환할 예정임. ○우리 영등포구만 2024년에도 이원화 체제를 유지할 예정임.	
58	12.4. (월)	임헌호	[구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따른 집행부 조치 진행사항 공유와 관리 방법 개선 필요]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에 따른 집행부 조치 진행상황을 의회에 공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이후 특별한 공유가 없었음.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에 근거해 의원 5분자유발언 및 구정질문에 내용에 대한 답변 또는 이행의 의무가 없다고 함.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제3항은 의무조항이 아니며 언제든지 발언의원이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할 수 있음.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를 사항을 의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향후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할 예정임. ○총괄부서에서는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구의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함.
59	12.4. (월)	임헌호	[풍수해피해 보험금 지급] ○지난 2022년 8월 중 집중호우로 인해 문래동 경인로 77길 일대 소공인 공장과 주택이 침	○보험가입이 오히려 피해보상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한 것에 대한 이유를 구청은 설명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모색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수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 ○지역경제과장은 피해공장대표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유했으며, 이에 가입을 진행한 곳들이 있음. ○1년 후인 2023년 7월 30일 동일한 사안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풍수해보험금을 지급 받고자 했으나, 보험사가 대부분의 피해사실에 소극적이며 대상에서 제외시켜, 결국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구청으로부터 500만원을 지급받는 반면에, 보험가입자는 200만원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음.	해야 할 것임.
60	12.4. (월)	임헌호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 참여 기업 선정] ○보다 넓은 의미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업체에게 개방하여 해외 진출지원사업을 하였으나 선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됨 ○특히 주요수출국가를 정할 때 먼저 참가단을 모집하고 참가단이 희망하는 국가를 선정하여 시장조사를 검토하고 최종 확정하여야하나 반대로 해외수출지원업체에서 1국가, 구청에서 1국가를 선정하는 방식은 어지껏 있지 않았던 것임.	○담당부서는 사업 목적대로 관내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그러다보니 주심사관으로 참석한 심사위원은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었고 선정된 업체는 평균 15명에서 18명 사이에 ‘중견기업’이라고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데 막상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기업 확인서를 받아옴. ○그러다보니 소상공인이 들어올 기회가 더 없어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1차, 2차 재공고를 해도 참여사가 없어 결국 3차 최종으로 6개 회사만이 참가함. ○실적표상 수출예상액은 문제 없어 보이나, 본의원의 경험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며, 중요한 점은 수출지원업체가 계속적인 피드백 없이 단발성에 그치므로 이런 현상이 생기며, 6개 회사 참가에 예산액이 1억 2천만원이 책정된 것도 감사 지적사항임. ○특이한 점은 왜 구청직원이 4명이나 출장을 가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하는 점이며, 결국 2명이 출장을 갔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 있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1	12.4. (월)	임헌호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승인 및 지원 부적정] ○ 2023. 9. 9. 개최된 제11회 영등포구연맹회장배 이종격투기 대회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개최 승인 및 보조금 교부가 시행되었음. ○ 영등포구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이 교부되는 체육대회는 ① 협회장배의 경우 참가자 100명 이상, 참가자 중 영등포구 주민 비율 50% 이상 ② 구청장기의 경우 참가자 300명 이상, 참가자 중 영등포구 주민 비율 80% 이상의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개최 승인 및 지원이 가능함. ○ 위 이종격투기대회는 협회장배로서 개최계획서 등에 따르면 예상인원이 총 100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2023. 8. 현재 연맹에 소속된 클럽의 회원수에 불과하고, 주민 비율 50% 이상 여부에 대한 확인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대회 참가인원 또한 최대 7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따라서 위 이종격투기대회에 대한 개최승인 및 보조금 교부는 지침을 위반하여 부적정함.	○ 우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개최신청을 제출한 해당 연맹에 대해 향후 일정기간 지원불가 등 조치가 필요함. ○ 또한, 다른 체육대회에 대하여도 유사한 부적정 사례가 있는지 조사 및 지도·점검이 필요함. ○ 끝으로, 향후 체육대회 개최 승인 및 지원 관련 서류에 대한 철저한 진위확인 및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비서류 요건을 강화하고 담당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것을 요구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2	12.1. (금)	최봉희	[소식지(영등포 소식) 배부대 설치 장소 홍보 및 관리 부실] ○소식지(영등포 소식)는 연 120만부, 매달 10만부가 발행되어 전체 세대기준 53%에 배부하고 있으나 배부대 설치 홍보 부족 및 관리 부실로 매월 배부되는 영등포 소식지는 대부분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각 세대 출입문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시범적으로 2021년에 관내 25개 아파트에 영등포 소식지 배부대 135개가 설치되었으나 지역 주민들은 설치 장소를 알지 못함.	○향후 소식지 배부대 추가 설치 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뿐만 아니라 1인 가구 등을 감안하여 오피스텔, 원룸 등을 포함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적의 장소에 설치하기 바람.
63	12.1. (금)	최봉희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공사 지연] ○총 공사비 38,755백만원 (국 2,400, 시457, 구30,091, 기금5,807)을 편성한 신길문화체육도서관은 2023년 10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사업 추진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계속된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기초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관(준공)예정일도 24년 12월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음.	○계속되는 공사 지연에 따른 자재값 인상 등 추후 공사비 증액이 예상되며, 향후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환금 및 책임소재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64	12.1. (금)	최봉희	[영등포 아트스퀘어 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철저] ○영등포 아트스퀘어 운영사업의 예산으로 매년 5억원을 지원하	○영등포 아트스퀘어 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관람객 수, 추이와 함께 관람객의 선호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이에 부합하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및 공간구성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고 있으며 관람객 수가 2022년에 14,102명, 2023년 10월 31일까지 60,307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여러 번 직접 방문을 해 보면 유동인구와 쇼핑인프라가 풍부한 대형 쇼핑몰 안에 설치되어 있다는 장소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지하 2층의 다소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인하여 이용객 수가 한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재배치하여 많은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트렌디하고 능동적인 홍보가 요구됨.
65	12.1. (금)	최봉희	[서울시스템 내 '인사소식지' 코너를 개설 운영에 따른 실적 저조] ○ 2023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8페이지) 2023년 상반기부터, 분기별 1회, 연 4회 발행주기로 하여, 서울시스템 내 '인사소식지' 코너를 개설하여 공무원 현황(통계), 인사일정, 분기별 임용현황, 변경된 인사제도, 알기쉬운 인사용어, 인사제도 FAQ 등 인사에 관한 사항등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였으나 확인결과 실제 서울시스템 내 '인사소식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게시물은 2023. 9. 17에 게시한 1건 뿐임을 확인함.	○ 당초 계획만 수립하고 이후 실천 의지가 없어 실적이 저조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보이며, 하루빨리 개선과 시정하여 직원들에게 다양한 인사정보를 제공하여 주기 바람.
66	12.1. (금)	최봉희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 일원화] ○ 동별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단체 중 설치목적과 활동 방향이 같	○ 조속한 시일 내에 시범운영 결과 검토 등을 통하여 일원화할 수 있도록 시정 요청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각각 구성되어 운영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주민자치위원회(6개동)와 주민자치회(12개동)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와 주민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67	12.1. (목)	최봉희	[영등포구 정신질환자 입원을 위한 병상 구축 미흡] ○건강증진과 업무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제7조 근거 규정에 의거 지역 내 병원과 MOU를 맺어, 응급입원이나 또는 행정 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담당부서에서는 서울시에서 병상을 늘리고 있다는 이유와 핑계로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을 엄연히 위반하고 있음.	○최근, 문지마범죄 및 정신질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사회 문제화로 비화됨에 따라 영등포구 보건소 담당부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과 응급입원을 통한 지원책 등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사례

[행정위원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우 수 사 례	비 고
1	12.4. (월)	신홍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등포구지부와 함께하는 천선도시 충남 청양군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고향사랑기부 추진) ○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7월 19일 우리 구 천선도시인 청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 이에 우리 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등포구지부와 함께 우리 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양군 수해복구와 청양군민 지원을 위한 모금을 함. ○ 기존의 성금을 모금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용하여 노조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수재의연금 총 17,385천원을 기부하였음. 이는 그 전의 기부 모금액보다 훨씬 큰 액수로, 기부금은 수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양군과 군민들의 지원을 위해 활용됨. ○ 기존 기부방식을 벗어나 고향사랑기부를 활용함으로써 시행 첫해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적극행정의 모범이 되었으며, 또한 노사의 화합과 천선도시와의 우호 증진 및 교류에 크게 기여함.	
2	12.4. (월)	신홍식	(공간과 문화를 중개하는 영등포문화복덕방) ○ 지역 내 교류와 소통의 단절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주민 참여형 마을기반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성은 높은 상황임. ○ 이러한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문화복덕방 사업을 기획하여 생활권 내 민간공간을 발굴, 102회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00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우 수 사 례	비 고
			○ 이 사업은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관계성을 회복한 사례로 그동안 주민들에게 벽이 높게만 느껴지던 전문전시공간이 문화공간으로 변신해 주민을 연결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사례로 지역주민의 문화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 ※ 2023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역문화 활성화분야 최우수상 수상	
3	12.4. (월)	우경란	(공공시설 운영현황 분석 및 종합 운영계획 자체 수립) ○ 공공시설 조성 및 운영이 각 부서별로 추진됨에 따라 종합적 관점에서 관내 공공시설 운영현황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해짐. ○ 이에 권역·행정동별·연령대별 공공시설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2023년 4월 공공시설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설 간 유사·중복기능 정비,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의 통폐합 또는 시설 이전 등 지역별 최적 배치를 통해 구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 ○ 특히 2023년도는 기획예산과 자체적으로 공공시설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용역 비용을 절감해 구재정 안정에 기여함.	
4	12.4. (월)	김지연	(조직문화실태조사를 통한 적극적 근로환경 개선 우수사례) ○ 2023년 영등포문화재단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 대응 지침 제19조(재발방지 조치 등)에 의거하여, 임직원의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 및 개선에 대한 별도 조사를 실시함. ○ 재단에서는 2023년 6월~7월 중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현황 및 문화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우 수 사 례	비 고
			○ 객관식 응답문항 뿐만 아니라 주관식 의견을 포함하여, 입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인사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함. ○ 이를 통해 재단은 조직문화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여, 근거중심의 인사 관리를 실천함으로써 재단의 문화사업의 주체인 인력의 보호와 안정성을 확보해 가고 있음.	
5	12.4. (월)	박현우	(고질·반복 민원 처리 개선방안 수립) ○ 추진배경 - 고질적인 반복 민원으로 담당 직원의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 초래함. - 특이민원 관리를 위한 과도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예산 낭비가 매우 커서 기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가 저하됨. - 반복·고질적 민원 및 폭언·물리적 위협 등 악성민원은 젊은 직원들의 공직 이직의 주요 원인임. - 의회에서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악성민원 대책 수립을 여러 차례 주문함. ○ 주요내용 - 3회 이상 반복 민원의 경우 민원처리 주무부서장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하고 종결 처리 후 재접수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후 종결 처리함. - 행정전문가가 답변 초안을 작성하고,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지원을 받음. - 지속적인 악성 민원으로 인해 직원들의 피로누적, 사기저하 등이 예상되어 행정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 - 물리적 충돌으로 직원 상해 발생 시, 고소·고발 등 강경 대응 예정임.	